

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7. 8 선고 2021나102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
담당변호사 우승원

피고, 피항소인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준호

변 론 종 결 2021. 5. 20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. 12. 16. 선고 2020가합72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2019. 10. 2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. 10. 29. 접수 제10218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2쪽 10행 “을 제2호증”을 삭제하고, 같은 행에 “M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”를 추가하며, 5쪽 4행 “을 제1호증”을 “을 제1, 2호증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5쪽 10행과 12행의 “원고”를 “B”으로 고치고, 13행~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,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는 399,747,000원이고, C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79,900,430원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들의 담보가치는 119,846,570원(= 399,747,000원-279,900,430원) 상당이었다.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301,044,653원 상당의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,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한다.

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합계 152,344,840원(= 2019. 10. 24.자 22,802,150원+2019. 10. 29.자 11,442,690원+2019. 11. 합계 118,100,000원) 상당의 유류를 추가로 공급받아 F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. 비록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, 그러한 거래가 평소 B과 피고 사이 거래와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

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. 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에는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유류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, 이러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유류 계속 공급을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고, 기존 유류대금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와 같이 기존 유류대금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』

○ 제1심 판결 5쪽 20행 “④”를 “③”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경미, 판사 홍승모, 판사 정순열

별지

목 록

1. 전주시 덕진구 G 전 1,263㎡
2. H 전 768㎡
3. I 전 155㎡
4. J 전 241㎡
5. K 답 142㎡
6. L 답 69㎡. 끝.

